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11

발의연월일: 2021. 6. 4.

발 의 자:김성주・인재근・홍성국

임호선 · 민병덕 · 이용빈

정필모 · 허종식 · 김민기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제공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까지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바 없어, 자료제 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자에 비하여 그 행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를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 득금"이라 한다)의 징수"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를 "부당이득금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라"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부 당이득금을 체납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 자료의 제공) ①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 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 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 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 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 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공할-----. 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부당이득금과 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u>보험</u>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u>2.</u> (생 략) ②·③ (생 략)

1.						
						<u>보험</u>
	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	글과

-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

 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

 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